

경찰의 搜查 主體性 明文化

- 이인기 의원 · 홍미영 의원 형소법 개정안 발의 -

警友會, 수사권 조정 촉구 성명서 발표, 서명 운동 전개

최근 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다각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각각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함(안 제195조 제1항)과 아울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수사에 관하여 협력관계로 하되, 검찰총장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6조)

또한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안 제196조 제2항)

이인기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있어 검사의 수사권 독점 및 검찰과

경찰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 권위주의 하에서 형성·강화되어 온 결과, 21세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상과 인권의식의 신장,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과 성숙 등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수사구조는 국민의 높아진 민도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참된 인권의 보장은 절대 독점 권력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권력의 분립은 입법·행정·사법간의 3권분립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상호간에도 요청되는 것으로, 오늘

날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상명하복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예는 유일하게 검찰과 경찰간의 관계에만 남아있으며, 다른 민주 선진국가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同 개정안은 그동안 97%의 수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면서도 권한이 없었던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상호 건강한 경쟁하에 수사의 투명성과 인권보호의 강화, 실제적 진실발견 역량의 극대화 및 이를 통한 대국민 수사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홍미영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하여 사법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196조제1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안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반드시 송치하도록 하여 전전송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하도록 명시했다.(안 제196조 제3항)

또한 송치 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196조 제4항)을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현행법은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는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97% 이상의 범죄를 사법경찰이 사실상 책임지고 수사하고 있는 현실과 현저히 괴리되어 있다거나,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검사에 권한이 집중된 수사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면서 『동법을 개정하여 사법경찰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김·경간 협력관계로 개선하는 한편,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전 송치토록 명시함으로써, 수사 개시·진행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되, 모든 수사 종결권과 소추권은 검찰이 행사토록 하여,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과 검찰의 수사통제·소추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수사구조에 있어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도모코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일제시대 구 형사소송법 체계를 그대로 계수한 이후, 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고착·강화되어

國民이 원하는 搜查權 조정

—— 최광식(경찰청 차장)



외국인 칼럼니스트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독단적이고 부패로 가득하며 법치주의의 외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은 바로 ‘건강하지 않은 정도로 막강한 한국 검사들의 권력’이라는 점을 이 보고서는 지적함으로써 핵심을 찌르고 있다.

‘검사가 재판 전과 재판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거의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편향,부패,절차의 오남용 가능성을 명백하게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국민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정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국민을 외면하는 현실이 계속될 것”이라고 끝맺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이 엄존하는데도 최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밥그릇 싸움이라거나 해묵은 논쟁거리쯤으로 치부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일반인이 모르게 신의 입장에서 법을 행사하던 ‘비밀주의 사법’이 이뤄졌던 중세의 암흑시대로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어리석은 판단일지도 모른다.

경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 검사만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경찰은 수사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를 고치자는 것이다. 경찰은 이것이 정의로운 수사구조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며,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법적 대우를 받는 시금석이라고 판단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없는 국가는 없다.

일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이 마구잡이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경찰의 주장대로 수사권 조정이 되더라도 경찰은 수사 개시,진행권이라는 극히 제한된 수사권만 갖게 된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전히 수사의 개시, 진행,종결권은 물론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제정권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경찰의 강제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고 수사 절차를 주도하게 된다.

경찰의 소박한 꿈은 전체 범죄의 97%를 경찰이 수사하는 현실에 맞게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개선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수사 구조다. ‘한 나라의 국민 수준을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경찰을 보라’고 한다. 우리 국민도 아름답고 정의로운 경찰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 검찰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봉건적 수사구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가 용기가 없거나 비겁하다는 역사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97%의 사건에서 경찰을 만나야 하는 국민은 경찰이 더 책임감 있고, 유능한 모습일길 바라고 있다. 물론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하루아침에 자리를 잡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15만 경찰 중 일부는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족함은 스스로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려 한다.

국민은 오히려 절실한 심정으로 현 상황을 응시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 목소리에, 그리고 수사의 협력자인 경찰의 목소리에 검찰이 귀를 막지 않았으면 한다. ‘검이독경(檢耳讀經)’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분권과 자율을 통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의 구현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면으로 계속〉



創警 60주년 元老 警友 초청 간담회
구종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 건국 및 호국의 역할을 담당했던 원로 警友, 각 기능별 모임의 회장단 등 60여명은 지난 6월 22일 創警 60주년을 맞아 허준영 경찰청장의 초청으로 경찰청을 방문하고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관련기사 3면>

이제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검사독점적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선진국형의 檢·警 수사권 공유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 19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협력적인 檢·警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시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법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시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밥그릇 다툼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만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2005 년 7 월 4일

大韓民國在鄉警友會 120萬 會員 一同

※ 2005년 6월 20일
조선·한겨레 신문에 성명서 발표